
**- (재)충청남도청소년진흥원 -
특정감사 결과 처분요구서**



감사위원회

(재)충청남도청소년진흥원 특정감사 결과 처분요구서

I 감사 개요

- 감사기간 : 2022. 9. 5.(월) ~ 9. 7.(수), 9. 14.(수) ~ 9. 16.(금)
- 감사대상 : (재)충청남도청소년진흥원
- 감사반 : 계약심사팀장 등 4명
- 감사범위 : 2019. 1월 이후 추진한 업무

II 감사결과

< 행정상 >

(단위 : 건)

계	시정	주의	권고	현지처분	비고
5	1	4	-	-	

< 재정상 >

(단위 : 천원)

계	세입	부과	반납	기타
13,205	-	-	13,205	-

< 신분상 >

(단위 : 명)

계	경징계	훈계	주의	경고 (기관장경고)	비고
-	-	-	-	-	

Ⅲ

처분요구사항

□ 감사결과 처분요구 목록 및 처분 요구서

번호	지 적 사 항	행정상	재정상(천원)		신분상	비고
			조치	금 액		
계	5 건	계 5	계	13,205		
		주의 4	반납	13,205		
		시정 1		-		
1	직원 출근 근태관리 소홀 및 승인 없이 출장	주의	-	-		
2	출연금 예산편성 부적정	주의	-	-		
3	공가(헌혈 및 건강검진) 부당 사용	개선, 주의	-	-	-	
4	업무추진비 사용 부적정	주의	-	-		
5	근로자 퇴직적립금 관리 소홀	시정	반납	13,205		

감사결과 처분 요구서

【제 목】 직원 출근 근태관리 소홀 및 승인 없이 출장

【기 관 명】 (재)충청남도청소년진흥원

【행 정 상】 주 의

【재 정 상】 없 음

【지적내용】

가. 현황

○ [표1] 직원 출근 근태관리 미확인 대상(2022.1.~6월)

(단위 : 건)

대상자			출근 관리(지문인식)		출근 미등록 사유	비 고
소속	직위	성명	출근일수	미등록 건수		
사무처	사무처장	신현성	97	97	사무처장은 최상위 직제이며 시간외수당 지급을 하지 않아 별도 시간외수당 산정을 하지 않으며, 이에 따라 출근 근태관리를 소홀히 함	

※ (재)충청남도청소년진흥원 제출자료 재구성

○ [표2] 결재(승인) 없는 출장자 현황

(단위 : 건)

구분	대상자	건수	출장목적	미 결재(승인) 사유	비 고
계	8명	15			
2020년	원장 박영의	8	언론관계자와 미팅 등 8건	출장 결재 확인 소홀	
	행정지원실장 이아영, 형다영 윤지우, 전지은	1	행정지원실 신규직원 환영회	업무가 늦게 끝나 늦게 점심식사 후 복귀	
	경영지원팀장 남혜진 정책기획팀장 안지우	1	원장과 경영정책실 경영지원팀, 정책기획팀 팀장 업무협의 진행	업무가 늦게 끝나 늦게 점심식사 후 복귀	
2021년	원장 박영의	5	충청남도교육청 청소년 환경운동 관련하여 오찬 및 간담회 등 5건	출장 결재 확인 소홀	

※ (재)충청남도청소년진흥원 제출자료 재구성 / 세무내역 별첨

나. 위법 부당한 사항

① 직원 출근 근태관리 소홀

- 「(재)충청남도청소년진흥원 복무규정」 제2조(적용범위) 및 제8조(출근)에 의하면 직원은 근무시간 시작 전에 출근하여야 하고, 직원의 출근과 퇴근 관리를 위해 출·퇴근 인식장비를 활용할 수 있으며, 출·퇴근 상황을 점검하여 그 결과를 근무평정 및 임금지급 등에 반영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 한편, (재)충청남도청소년진흥원에서는 직원의 출근과 퇴근 관리를 위하여 본원 3층 사무실입구에 지문인식 장비를 설치하였고 충청남도청소년진흥원 행정지원실-1524(2019.4.29.)호 “진흥원 출·퇴근 관리방법 일부 변경 시행” 문서를 통하여 퇴근 지문인식은 초과근무 신청자만 하고, 전일 출장자는 제외하고 전 직원이 출근 지문인식을 하도록 내부 방침을 시행한 바 있다.
- 그런데, 위 [표1] “직원 출근 근태관리 부적정 현황”과 같이 2022년도 상반기(1~6월) 전 직원에 대한 출근 근태관리 확인 한 바, 사무처장은 출근 지문인식을 하지 않아 근무시간 시작 전에 출근하였는지를 확인할 수 없음에도 지문인식을 하도록 하지 않는 등 근태관리를 소홀히 한 사실이 있다.

② 결재(승인) 없이 출장

- 「(재)충청남도청소년진흥원 복무규정」 제12조(출장)에 의하면 업무에 필요에 따라 출장하는 직원은 사전에 승인을 득한 후 해당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 「(재)충청남도청소년진흥원 사무관리규정」 제9조(전결 사항) 및 [별표 1] “사무의 위임전결 사항”에 의하면 이사장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 중 원장, 처장·센터장의 국내 출장명령 및 복명은 사무의 위임전결 사항에 따라 원장의 전결사항으로 규정되어 있다.

- 그런데, (재)충청남도청소년진흥원 원장 박영의 등 8명은 위 [표2] “결재(승인) 없는 출장자 현황”과 같이 근무시간에 언론관계자 미팅 등 업무추진을 위한 유관기관 오찬과 기관방문을 하였음에도 전결권자의 출장 승인 없이 근무지를 이탈한 사실이 있다.

【처분요구】

(재)충청남도청소년진흥원 원장은

- 출근 확인을 위한 지문인식 등 근태관리에 철저를 기하고 출장 전 반드시 결재권자의 승인(결재)을 받도록 하시기를 바라며,
- 소속 직원에 직무교육을 통해 유사사태가 재발하지 않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별첨] 업무추진비 집행 관련 출장 미승인 내역

(단위 : 원)

일자	출장 목적	출장자	출장승인 (여/부)	미승인 사유	업무추진비 집행 내역		
					금액	집행장소 (소재지)	결재시간
'20.1.16. (목)	행정지원실 신규직원 환영회	원장, 행정지원실장 외 직원 4명 (이아영,형다영,윤지 우,전지은)	부	업무가 늦게 끝나 늦게 점심식사 후 복귀	114,000	천안샷쵸로 (천안)	14:40
'20.6.22. (월)	마을공동체 포럼 기획위원 및 관계자와 기관방문	원장	부	출장 결재 확인 소홀	18,000	삼보어죽	17:55
					39,300	뚜주루제과	18:03 18:51
'20.7.21. (화)	언론 관계자와 미팅	원장	부	출장 결재 확인 소홀	135,000	천안경복궁	11:38
'20.8.6. (목)	원장과 경영정책실 경영지원팀, 정 책기획팀 팀장 업무협의 진행	원장 외 경영정책실 경영지원팀장 (남혜진), 정책기획팀장 (연지우)	부	업무가 늦게 끝나 늦게 점심식사 후 복귀	66,000	천안샷쵸로	14:30
'20.8.28. (금)	법인 운영 관련 본원 이사와 업무협의	원장	부	출장 결재 확인 소홀	20,000	(주)방아다리	13:17
					9,800	스타벅스 천안쌍용역점	13:24
'20.9.9. (수)	아산시 청소년문화의 집 지도자와 업무협의	원장	부	출장 결재 확인 소홀	26,000	모나무르더그 린카페	17:17
'20.12.28. (월)	충남교육청 관계자들과 교육 계획안 협의	원장	부	출장 결재 확인 소홀	70,000	스폰테	16:09

일자	출장 목적	출장자	출장승인 (여/부)	미승인 사유	업무추진비 집행 내역		
					금액	집행장소 (소재지)	결재시간
'20.12.31. (목)	학교밖청소년 및 지도자 연말 간담회	원장	부	출장 결재 확인 소홀	60,000	갤러리아백화점 센터시티 올라(레스토랑6)	14:24
					97,000	스시린 두정점	17:11
'21.3.26. (금)	충청남도교육청 청소년 환경운동 관련하여 오찬 및 간담회	원장	부	출장 결재 확인 소홀	85,000	두정 일구팔칠	16:00
'21.6.25. (금)	학교밖청소년 창업지원 논의를 위 한 오찬	원장	부	출장 결재 확인 소홀	60,000	모미지	14:05
'21.8.31. (화)	도내 청소년재단 관계자들과 청소년정 책 관련 업무 논의를 위한 오찬	원장	부	출장 결재 확인 소홀	90,000	청미래	17:14
'21.10.15. (금)	평가컨설팅 관계자들과 업무 논의를 위 한 오찬	원장	부	출장 결재 확인 소홀	32,000	소담골 두정점	12:57
	성남재단관계자들과 업무 논의를 위 한 만찬	원장	부	출장 결재 확인 소홀	48,000	청담미래	17:37
'21.10.25. (월)	다문화청소년지원센터 관계자들과 업 무 논의를 위한 오찬	원장	부	출장 결재 확인 소홀	64,000	오월의꽃수레	13:03
					25,500	모나무르더 그린카페	14:01

※ (재)충청남도청소년진흥원 제출자료 재구성

감사결과 처분 요구서

【제 목】 출연금 예산편성 부적정

【기 관 명】 (재)충청남도청소년진흥원

【행 정 상】 주 의

【재 정 상】 없 음

【지적내용】

가. 현 황

○ 출연금 예산요구 및 집행 현황

(단위 : 천원)

구분	요청금액	배정금액	집행잔액			비고
			총액	세부 내역	발생사유	
계	2,511,000	2,511,000	731,685			
2019년	1,221,000	1,221,000	419,256	<ul style="list-style-type: none"> • 358,880(인건비) • 18,787(운영비) • 41,589(행사홍보비 등) 	임금체계 개편 추진 사전 반영 계획대비 채용 지연	
2020년	1,290,000	1,290,000	312,429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55,760(인건비) • 42,628(운영비) • 14,041(행사홍보비 등) 	임금체계 개편 추진 주무부서 미인정 결원 발생 등	

※ (재)충청남도청소년진흥원 제출자료 재구성 / 세부내역 별첨

나. 위법 부당한 사항

○ 「지방출자·출연기관 예산편성지침」 Ⅱ. “예산편성의 원칙” “1. 재정건전성 강화”에 의하면 출자·출연기관은 합리적인 기준에 의해 지출경비를 산정하고, 관련 자료에 의거 정확하게 수입을 산정하여 예산 계상하며, 재정의 건전한 운영을 위해 노력하고 지방자치단체에 부담을 전가하는 사업이 시행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 3. “발생주의 원칙” “예산편성”에 의하면 지출예산은 예산편성단계부터 사업계획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불용액 과다 발생 등 재원이 사장되는 사례가 없도록 편성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 그런데, (재)충청남도청소년진흥원에서는 2018년부터 조직 안정성 확보를 위해 직급별 임금 제도 도입 등 임금체계 개선을 추진하였고 2019년 임금 개편안의 일부만 반영(19.12.26. 이사회 승인), 2020년 수당 복원 등 최종 확정되면서(20.12.24. 이사회 승인) 사실상 2021년부터 인건비가 인상되는 효과가 발생 되었으나, 2019년과 2020년도 출연금 예산편성 시 이사회 승인과 주무부서의 승인이 안 된 임금체계 개선안을 반영하는 등 지출예산을 면밀히 검토하지 않아 2019년 418,256천원과 2020년 312,429천원의 출연금 예산이 반복적으로 불용처리 되어 총 731,685천원을 다른 사업에 활용하지 못하는 등 재정 건전성을 저해하는 결과를 초래 하였다.

【처분요구】

(재)충청남도청소년진흥원 원장은

○ 사업계획 등을 면밀히 검토하고 합리적인 기준에 의해 지출경비를 산정하여 불용액이 과다 발생하는 등 재원이 사장되는 사례가 없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감사결과 처분 요구서

【제 목】 공가(헌혈 및 건강검진) 무단 사용

【기 관 명】 (재)충청남도청소년진흥원

【행 정 상】 개 선, 주 의

【재 정 상】 없 음

【지적내용】

가. 현 황

○ [표] '19.1.1. ~ '22.6.30. 공가 무단사용 현황(헌혈 및 건강검진)

연번	공가 사유	공가 일자	요일	사용시간	성명	소속	부당 사유	비고
1	헌혈	2019-12-06	금	12:00~18:00 (5시간)	전지은	사무처	반일(4시간) 초과	퇴사
2	헌혈	2019-12-13	금	12:00~18:00 (5시간)	서지인	사무처	반일(4시간) 초과	퇴사
3	헌혈	2019-12-13	금	12:00~18:00 (5시간)	형다영	사무처	반일(4시간) 초과	퇴사
4	헌혈	2020-03-27	금	09:00~18:00 (1일)	김현	성문화센터	반일(4시간) 초과	퇴사
5	헌혈	2020-03-27	금	09:00~18:00 (1일)	정신화	성문화센터	반일(4시간) 초과	
6	헌혈	2020-03-27	금	09:00~18:00 (1일)	최윤선	성문화센터	반일(4시간) 초과	퇴사
7	헌혈	2020-08-14	금	12:00~18:00 (5시간)	전지은	사무처	반일(4시간) 초과	퇴사
8	헌혈	2020-11-23	월	12:00~18:00 (5시간)	최윤선	성문화센터	반일(4시간) 초과	퇴사
9	헌혈	2020-12-03	목	12:00~18:00 (5시간)	정신화	성문화센터	반일(4시간) 초과	
10	헌혈	2022-01-11	화	13:00~18:00 (5시간)	정신화	성문화센터	반일(4시간) 초과	
11	헌혈	2022-04-04	월	13:00~18:00 (5시간)	정신화	성문화센터	반일(4시간) 초과	
12	건강검진	2020-10-08	목	09:00~18:00 (1일)	박영의	원장	병원진료(병가)를 공가로 사용	입기만료 '22.11.11.

※ 충청남도청소년진흥원 제출자료 재구성

나. 위법·부당사항

- 충청남도지사는 2019.10.4. 「공공기관 등 직원 헌혈 협조 요청」(보건정책과-21641)과 2020.6.4. 「공기업 및 출자출연기관 헌혈 협조 요청」(예산담당관-7865)을 시행하면서 헌혈자에게는 '공무원 복무규정'에 준하는 공가처리를 권장하였고,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제7조의6에 의하면 헌혈에 참가하는 경우 '직접적으로 필요한 기간 또는 시간'을 공가로 허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충청남도청소년진흥원 복무규정 제17조(공가)를 보면 헌혈을 사유로한 공가는 규정하고 있지 않으나 충청남도청소년진흥원장은 2019.10.30. 「2019년 사랑의 헌혈운동 실시 계획」(행정지원실-4242)에서 헌혈자에게 헌혈 당일 반일(4시간) 공가 혜택을 부여한다고 한 사실이 있다.
- 한편, 「국민건강보험법」 제52조(건강검진)에 의하면 국민건강보험공단은 가입자에 대하여 건강검진을 실시하여야 하고,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25조(건강검진)에 의하면 건강검진은 2년마다 1회 이상 실시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재단법인 충청남도청소년진흥원 복무규정」 제17조(공가)에 의하면 원장은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건강검진을 할 때 필요한 기간 동안 공가를 허가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 그런데, 2019년 1월부터 2022년 6월 기간 동안 충청남도청소년진흥원 소속 직원의 헌혈 및 건강검진 공가 현황을 점검한 결과 ([표] 참고),
 - 전지은 등 6명(11건)의 직원은 충청남도지사와 충청남도청소년진흥원장이 '헌혈에 직접적으로 필요한 기간 또는 시간'으로 인정하는 4시간을 초과하여 한 번에 5시간(8건) 또는 1일(3건)로 공가를 부당하게 사용하였고,

- 박영의 원장 1인은 병원진료(통원치료)를 받으면서 병가(또는 연가)가 아니라 건강검진을 받는 것으로 하면서 공가를 부당하게 사용한 사실이 확인되었다.

【처분요구】

(재)충청남도청소년진흥원장은

-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등을 참고하여 헌혈 참여가 공가 사유에 포함될 수 있도록 복무규정 개선을 검토하여 주시고
- 소속 임직원들이 복무규정을 숙지하고 철저히 준수하여 공직기강이 확립되도록 복무 교육 및 관리에 유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결과 처분 요구서

【제 목】 업무추진비 사용 부적정

【기 관 명】 (재)충청남도청소년진흥원

【행 정 상】 주 의

【재 정 상】 없 음

【지적내용】

가. 현 황

○ [표] '19.1.1. ~ '22.6.30. 업무추진비 사용 부적정 현황 (단위: 명, 원)

연번	지출 일자	집행내용	집행자	참석자 (청탁금지법 대상자)	참석 인원	집행액	최대 집행 가능액*	합계 (초과액)
						2,728,100	2,340,000	388,100
1	2019. 12.26	2019년 송년회 장소 및 식사 지급	전지은	충남청소년진흥원 임직원(50)	50명	1,783,000	1,500,000	283,000
2	2021. 07.14	충청남도 해바라기센터 청소년 문제 업무논의를 위한 오찬	박영의	충남청소년진흥원(1), 충남해바라기센터(2)	3명	116,000	110,000	6,000
3	2021. 10.26	청소년 노동인권 관계자들과 노동현장 발전방안 논의를 위한 만찬	박영의	충남청소년진흥원(1), 충남청소년인권네트워크(7)	8명	320,000	310,000	10,000
4	2021. 11.23	언론관계자들과 청소년사업 홍보를 위한 만찬	박영의	충남청소년진흥원(1), 티브로드중부방송(7)	8명	320,000	240,000	80,000
5	2022. 03.15	경영평가 대응 TF팀 평가준비 협의를 위한 오찬	박영의	충남청소년진흥원(6)	6명	189,100	180,000	9,100

* 최대 집행가능액 : 업무추진비 1인/1회 집행가능 한도 4만원 적용액(단, 청탁금지법 대상자는 3만원)

※ 충청남도청소년진흥원 제출자료 재구성

나. 위법·부당사항

- 「지방출자·출연기관 예산집행기준」에 따르면, 업무추진을 위한 간담회 등 접대비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1인 1회 당 4만원 이하 범위에서 집행하고, 행사성격 등 불가피한 경우에는 증빙서류 등에 사유를 명시하고 4만원을 초과하여 집행할 수 있다. 다만, 「청탁금지법」 제2조에 따른 공직자 등에 집행하는 접대비는 3만원 이하, 기념품 및 특산품 지급은 5만원 이하 범위에서 집행하여야 하고, 청탁금지법 제2조 제1호에 의하면, 충청남도청소년진흥원 및 언론기관 소속 임직원은 청탁금지법 적용 대상자로 3만원 이하에서 간담회 등 접대비를 집행하여야 한다.
- 또한 「지방출자·출연기관 예산집행기준」에 따르면, 연도말 예산의 몰아쓰기 방지를 ‘예산집행 10대 원칙’에 포함하면서 집행잔액 소진을 위해 선심성 연말 송년회 개최를 ‘예산 몰아쓰기’의 대표 사례로 언급하고 있다.
- 그런데, 2019년 1월부터 2022년 6월 기간 동안 충청남도청소년진흥원에서 집행한 업무추진비 내역을 점검한 결과([표] 참고),
 - 2019.12.26.에 ‘2019년 송년회 식사 지급’으로 「청탁금지법」 제2조 적용 대상인 충남청소년진흥원 소속 직원 50명에게 1,783,000원(1인 평균 35,000원)을 집행하는 등 총 5건, 총 2,728,100원을 집행하면서 최대 집행가능액보다 총 388,100원을 초과하여 간담회 등 접대비를 집행한 사실이 확인되었고,
 - 특히, 2019.12.26. ‘2019년 송년회 식사 지급’의 건은 정원가산업무추진비 예산(4,800,000원)의 집행잔액 2,434,200원(집행을 49.3%, 2019.12.25. 기준) 중 1,783,000원을 연말에 일시에 사용한 것으로, 「지방출자·출연기관 예산집행기준」에서 연말에 무리한 집행잔액의 소진을 방지함으로써 재정의 건전성 및 집행의 균등화를

도모하고자 제시하는 ‘예산집행 10대 원칙’을 위반한 것으로 판단된다.

【처분요구】

(재)충청남도청소년진흥원장은

- 소속 임직원들이 업무추진을 위한 간담회 등 접대비를 지출함에 있어 「지방출자·출연기관 예산집행기준」을 숙지하여 관련 규정을 위반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결과 처분 요구서

【제 목】 근로자 퇴직적립금 관리 소홀

【기 관 명】 (재)충청남도청소년진흥원

【행 정 상】 시 정

【재 정 상】 13,205천원(반납)

【지적내용】

가. 현 황

○ [표] '19.1.1. ~ '22.6.30. 퇴사자 퇴직적립금 미반납 내역(단위: 명, 원, %)

구분	1년 미만 재직 후 퇴직 인원(명)	총급여	퇴직적립금 누적액(반납액)	예산 구분	분담율
합 계	12명 (정규6, 계약1, 공무5)	188,069,010	13,205,140		
사무처	정규6, 계약1	124,452,480	9,265,720	출연금	도비 100
활동진흥센터	공무 2	10,337,400	669,600	사업비	국비 15, 도비 85
천안성문화센터	공무 1	14,001,900	968,990	사업비	국비 50, 도비 50
홍성성문화센터	공무 1	19,978,460	1,452,310	사업비	국비 50, 도비 50
상담복지센터	공무 1	19,298,770	848,520	사업비	도비 100

※ 충청남도청소년진흥원 제출자료 재구성

나. 위법·부당사항

○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8조에 따르면, 사용자는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퇴직 근로자에게 지급할 수 있는 제도를 설정하여야 하고, 「충청남도 지방보조금 관리지침」에 따르면, 보조사업자는 사업을 완료하거나,

폐지 승인을 받은 때, 회계연도가 끝났을 때에는 지방보조사업 실적보고서를 작성하여 도지사에게 제출하고 남은 금액은 반환하여야 한다.

- 그런데, 2019년 1월부터 2022년 6월 기간 동안 충청남도청소년진흥원의 퇴직적립금 관리 현황을 점검한 결과([표] 참고),
 - 출연금 및 사업비 내의 인건비와 관련하여 직원 12명(정규직 6, 계약직 1, 공무원 5)의 경우 1년 미만으로 재직하여 퇴직금 지급 사유가 소멸하였음에도 퇴직금으로 적립한 13,205,140원을 출연금 결산 및 사업정산 시 반납 조치하지 않은 사실이 확인되었다.

【처분요구】

(재)충청남도청소년진흥원장은

- 소속 임직원들이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및 「충청남도 지방보조금 관리지침」을 숙지하여 근로자 퇴직적립금 관리에 소홀함이 없도록 만전을 기하여 주시고
- 반납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된 퇴직적립금 13,205,140원을 「충청남도 지방보조금 관리지침」 등에 따라 조치하시기 바랍니다.